#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 인사 규정

제 정 : 2008. 3. 1.
개 정 : 2009. 3. 1.
개 정 : 2011. 5. 1.
개 정 : 2012. 6. 22.
개 정 : 2013.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 3조에 의거하여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불교문화연구소 소속 HK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HK교원 구분 및 직위)** ① HK교원은 HK교수와 HK연구교수로 구분한다.
② HK교수의 직위는 HK교수, HK부교수, HK조교수로 한다.
③ HK연구교수의 직위는 HK연구교수로 한다.

**제3조(HK인사위원회)** ① HK교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HK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교무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불교학부장, 불교문화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HK교수 포함)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9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교무지원처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HK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HK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는 불교문화연구소에서 지원한다.
⑥ HK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제반 서류 및 연구실적 심사를 위하여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교내외 인사 약간명으로 구성된 임용심사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임용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외인사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신규임용)** ① HK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
② HK교원의 채용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HK교수의 채용은 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와 소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2. HK연구교수의 채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위원회의 심의와 소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HK교수는 학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기관을 기준으로,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기관

을 기준으로 동일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동일교 출신일지라도 인문학이 아닌 타학문분야를 전공한 학위 취득의 경우 타교 출신으로 간주한다.

④ HK교원의 신규임용은 임용직위에 관계없이 2년이내의 계약제로 임용한다. 다만, HK연구교수의 경우, 신규임용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일이 인문한국 지원사업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인문한국 지원사업 만료일까지로 한다.

⑤ HK교수의 신규임용 시 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년수 및 연구업적점수는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하되, 신규임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신규임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임용직위 | 평가대상기간 | 연구실적 평가기준 점수 |
|---|---|---|
| HK연구교수 | 최근 3년이내 | 200점(박사학위논문포함) |

**제4조의2(구비서류)** 교원인사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조(재임용)** ① HK교원은 HK사업 수행기간내 연구업적의 정량평가, 정성평가, 연구소내 사업수행평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② HK교원의 재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HK교수의 재임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하되 위원회의 심의와 소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2. HK연구교수의 재임용은 위원회의 심의와 소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임용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일이 인문한국 지원사업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인문한국 지원사업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HK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평가점수는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 연구업적의 정량평가 점수와 HK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연구업적의 정성평가점수, 연구소 내 사업수행평가 점수로 한다.

④ HK연구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의 정량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HK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연구업적의 정성평가점수, 연구소 내 사업수행평가 점수로 한다.

| 재임용직위 | 평가대상기간 | 연구실적 평가기준 점수 |
|---|---|---|
| | | 학술저작/저명/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논문 최소기준 |
| HK연구교수 | 최근2년 이내 | 400점 |

⑤ HK교원의 직위별 재임용에 따른 임용기간은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단,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⑥ 신규계약제임용 HK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연구실적 점수 기준은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승진임용)** ① HK교수는 직위별로 정한 경력연수와 업적평가점수가 승진에 필요한 기준에 도달하면 승진 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기간 중이거나 휴직중인 HK교수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

② HK교수의 승진임용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HK교수의 승진임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2. HK교수의 승진임용은 위원회의 심의와 소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HK교수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평가점수는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 연구업적의 정량평가 점수와 HK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연구업적의 정성평가점수, 연구소내 사업수행평가 점수로 한다.

**제6조의2(교육업적 반영 기준)** HK교수가 교육을 담당한 경우에는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하여 반영한다.

**제7조(정년보장 임용)** ① HK교수의 정년보장 임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과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다.

② HK부교수가 HK교수로 승진하거나 신규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HK교수는 정년보장 심사를 위하여 정년보장 심사원(지정양식)과 정년보장 후보자추천서(연구소 내 HK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서명-지정양식)를 불교문화연구소에 제출한다.

③ 소장은 정년보장 심사 신청대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 5. 1.>

⑤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심의에 있어 위원회는 HK교수의 사업수행 실적과 연구 계획, HK지원 사업 관련 연구실적과 개인연구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① HK교원의 보수는 연구수행 기간 중에는 지원기관의 기준 및 지원금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총장은 HK연구교수의 연구능력을 평가하여 특별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HK연구교수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연구업적평가와 소속 연구소내 사업수행 평가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① HK교원은 이 대학교에 상근하여야 하며 HK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반 학술연구에 전념하되, 구체적인 복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0조(임용계약)** ① HK교원은 소속, 직위,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평가 등을 명기한 임용계약서(별지1,2)를 체결한다.

② 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연구전임교원 임용규정, HK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행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제5조 1항에 대하여는 2013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2. 제5조 4항에 대하여는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3. HK연구교수 임용계약서는 2013년 3월1일부터 이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1]

# HK교수 임용계약서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HK교수 임용 계약을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소 속 : 불교문화연구소
2. 직 위 :
3. 임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4. 급 여: "을" 의 급여는 HK교수 급여표에 따른 해당 호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5. 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인사규정,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복무규정에 따른다.
6. 업적 및 평가

①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인사규정,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을"은 "갑"이 정한 연구를 담당하여야 하며, HK공동연구 및 HK사업담당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

7. 재계약임용 조건 및 절차 :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인사규정,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며 "갑"은 "을"의 계약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계약임용여부를 "을"에게 통보한다.
8. 계약임용의 해지 : "갑" 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계약임용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을"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 계약의 파기는 물론 "갑"의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및 금강대학교 규정을 준용하되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다.

상기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호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인)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을" (인)
주소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별지 2]

# HK연구교수 임용계약서

금강대학교 총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HK연구교수 임용 계약을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소 속 : 불교문화연구소
2. 직 위 : HK연구교수
3. 임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4. 급 여 : "을" 의 급여는 한국연구재단 HK사업비에 따른 연봉제(퇴직금 포함)로 한다.
5. 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 관련규정에 따른다.
6. 업적 및 평가
   ①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인사규정,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을"은 "갑"이 정한 연구를 담당하여야 하며, HK공동연구 및 HK사업담당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
7. 재임용조건 및 절차
   ① "을" 의 임용계약 갱신은 "갑" 의 HK사업 규정에 의거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임용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일이 인문한국 지원사업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인문한국 지원사업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갑" 은 "을" 의 임용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을"에게 통보한다.
8. 계약임용의 해지 : "갑" 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계약임용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을"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 계약의 파기는 물론 "갑"의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및 금강대학교 규정을 준용하되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다.

상기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호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금강대학교 총장 (인)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을" (인)
주소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